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신 :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
010-4069-0322, nhk@pspd.org,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장보현 02-3672-3440)

제 목 [보도자료]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방선거
노인돌봄 정책요구 기자회견

날 짜 2018. 5. 8. (총 13 쪽)

보 도 자 료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지방선거 노인돌봄 정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5. 8. (화) 10:30, 광화문 광장

1. 취지 및 내용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5. 8.(화) 10:30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방선거에서 노인돌봄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5월 8일)이 다가왔지만, 한국 노인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 독거노인의 증가, 부족한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한국에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는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 지방선거가 1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어르신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어르신 돌봄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돌봄 종사자들의 존엄한 노동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하여야 합니다.
-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최경숙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가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노인돌봄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이 지자체에 요구하는

어르신돌봄 정책 요구안을 존엄한 노후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정보제공,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실현, 노인돌봄 조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권 개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의 유희숙 협회장이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절박함과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참가단체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으며, 지자체에 제안하는 노인돌봄 공약 요구사항에 카네이션을 붙이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본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노인돌봄 정책 요구안은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 후보자들에게 전달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각 지역단체를 통하여 지역의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613 지방선거 노인돌봄 정책 요구 기자회견**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 일시 장소: 2018년 5월 8일(화) 오전10시 30분, 광화문 광장

- 주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순서

- 사회: 현정희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동대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발언
 - ① 기자회견 취지 | 최경숙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동대표,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
 - ② 지자체에 요구하는 노인돌봄 정책 요구안 설명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③ 요양보호사 현장 발언 |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지자체에 제안하는 공약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퍼포먼스

▣ 별첨1. 기자회견문

▣ 별첨2. 존엄한 노후실현을 위한 613 지방선거 노인돌봄 정책안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5월 8일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부모님의 감사함을 마음속에 되새겨보며, 아울러 부모님의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인구 14%이상의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인이 사회적 비용과 부담으로가 아니라 ‘누구나 행복하고 존엄한 생활을 할 삶의 주체’로 인식되고,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합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기반 정치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권을 창출한 시민의 힘으로 행복권, 시민권이 보장되는 지역의 삶을 만들어보자는 노력이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고, 보육, 요양 등 생활에 밀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요구는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현장은 암울합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 독거노인의 증가, 부족한 노인돌봄서비스,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한국에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는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입니다. 하지만 현재 노인 100명 중 7.7명만이 요양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며, 2만여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보험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화되면서 영세기관의 과잉공급과 하향식 출혈경쟁 등으로 인한 편법과 불법이 만연하고, 노인돌봄의 경제적 지역적 불평등과 서비스 질 하락, 노인 인권침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인돌봄의 민간시장화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입니다.

돌봄 현장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존엄한 노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살아온 지역, 살아온 집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돌봄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앞장서서 공공요양기관을 확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좋은돌봄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서비스이용자의 이용권 모두가 존중되는 현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우선 지역별 노인 돌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침해예방교육과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치구 단위 2개소 이상 구립 직영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 설립으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노인 돌봄 실현해야 합니다.

돌봄서비스는 노동력의 질이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돌봄 서비스는 대표적인 낮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서비스 영역 내의 이직률이 높고, 서비스의 질 향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 보장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4년의 지방정치 및 지역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나선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노인에 대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만큼 후보자들이 노인인권 보장과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적 운영 및 공공성 보장, 돌봄노동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카네이션 꽃 한 송이 보다 더 값진 공공요양으로 보답하는 길에 후보님들의 적극적인 공동행동을 요청 드립니다.

2018. 5. 8.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13 지방선거 노인돌봄 정책 3대 정책 목표 - 8개 세부정책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I. 존엄한 노후, 차별없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인프라 확충 및 정보제공

1. 지역별 노인돌봄 실태 파악 및 정보제공
2. 노인 인권 침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II.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노인돌봄 실현

3. 구립 직영 요양시설 확충과 구립직영 통합 재가요양기관 설립
4.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5.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인력 충원

III. 요양보호사 등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권 개선

6. 요양보호사 실태파악과 처우개선 조례 제정
7. 요양보호사 생활임금(생계형 일자리) 보장 및 노동조건 개선
8.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권, 건강권, 휴가권 보호

I. 존엄한 노후, 차별없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인프라 확충 및 정보제공

1. 지역별 노인돌봄 실태 파악 및 정보제공

현황

-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127만명 ,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수 8만2천명,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6.45% (전국 7.5%).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노인돌봄복지의 중요한 기준은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둘째, 소득수준, 셋째 신체건강상태임. 지방정부에서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가사간병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에 없는 소득기준이 존재하고 지방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되므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
- 노인돌봄서비스가 전반적인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 생활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범위 확대,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정책방안

- 광역, 기초 자치단체별 노인실태 파악 및 지자체별 노인돌봄의 접근성 확보, 정보제공: 노인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과도한 시설 입소가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는 Age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노인돌봄 서비스 구축

2. 노인 인권 침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 노인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및 학대 신고 시 신고자 보호 및 보상체계 마련

II.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노인돌봄 실현

3. 구립 직영 요양시설 확충과 구립직영 통합 재가요양기관 설립

현황

- 민간 장기요양기관 난립과 공공기관의 부족

-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총 2,573개소 중 개인 운영 기관이 98%으로 공공의 역할이 현저히 부족함. 또한 서울시 운영 시립구립 요양기관 40개소 중 재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은 0개소인 실정임.(2017년 기준)
-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서비스 공급구조로 인해 영세한 민간 공급기관 난립으로 과잉 경쟁이 유발되고 있음. 이용자 확보를 위한 불법편법이 난무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의 도덕적 해이도 증가하고 통합적인 돌봄 관리체계 또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왜곡된 서비스 공급구조로 인해 이용자 만족도 낮음 (서비스기관의 담합, 부당청구 등 편법, 불법적 행태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고 재가서비스 기관 중 약 30%는 폐업과 설치를 반복하고 있음)
- 주요국의 장기요양서비스 기관 운영주체

		공공	비영리민간	영리민간
한국	시설보호	2.0	27.1	70.9
	재가보호	0.6	15.3	84.0
스웨덴	시설보호	89.0	11.0	
	재가보호	93.0	7.0	
영국	시설보호	19.2	15.5	65.4
	재가보호	32.4	67.6	
독일	시설보호	8.2	56.0	35.9
	재가보호	18.0	62.0	20.0
일본	시설보호	100.0		
	재가보호	1.5	49.9	48.6

자료: 한국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내부자료.

외국 자료는 석재은(2008) 재인용; Martin Knapp(2006); Boessenecker(2005: 284); WAM NET;

Palme et al(2002: 340-341).

- 상호배타적, 단절된 노인돌봄서비스

- 현재는 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입소시설서비스 등이 각각 별도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일부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별도로 운영함.
- 따라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서비스를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고 이용여부를 결정해야 함.

- 재가(사적 공간에서 1:1 대면)서비스의 특성 및 한계

- 재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기관의 개입 및 관리적 역할이 작고, 방문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인력의 자질과 역량에 의해 서비스 질이 좌우되는 특성이 있음. 공공이 서비스 인력에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의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시급제, 저임금, 고용불안정 지속, 폭언과 폭행, 성희롱의 위협에 노출, 및 업무범위 이외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 지속

정책방안

- 질이 담보되지 못하는 민간 영리 장기요양기관 난립과 공공 노인돌봄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단위로 구립 직영 요양시설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 지역사회 어르신돌봄 욕구에 대해 선도적 위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며 대응할 수 있는 구립 직영 통합 재가요양기관 설립

4.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현황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시도 단위로 설치되는 공단의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 수준 등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음.
- 서비스 시장화 정도 및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은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공단 사업범위에 포함시켜서 일자리 개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시립 . 구립 시설요양기관 및 보육시설을 공단화하고, 추가로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체계에 있어서 공공이 담당하는 비율을 점차 늘려가야 함.

- 모든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민간영역을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이 되어야 함. 단계적인 확대 계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30% 정도를 공단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정책방안

- 장기요양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전반을 공적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직접운영, 요양보호사 및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 직접고용, 사회서비스 통합적 운영 및 서비스 질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야 함
- 서비스의 공급 방식과 관련하여 민간에 전적으로 위탁할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계기로 구립/시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 함.

5.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인력 충원

현황

- 지자체의 서비스기관의 진입퇴출 및 관리감독 책임 방기: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의 격차가 극심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서비스 기관의 진입 및 퇴출을 엄격히 심사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보증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는 안전하고 보증된 서비스 제공기관 선별과정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
- 현재 대부분의 시설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근무제도가 24시간 맞교대, 12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음.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이외에도 휴게시간 부여, 각종 시간외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 법정 요양보호사 인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음. 현재 이용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인원을 채워 넣고 실제 근무인원은 최소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 재가요양기관의 경우는 이용자 부담금을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통해 이용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있음.

정책방안

- **요양기관 진입/ 퇴출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 지침화** : 요양기관 운영기준 및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에 대한 최저기준(노동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요양기관에게 준수할 것을 지침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의 적용을 활성화하여 운영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사례를 만들어야 함.
- **서비스 품질 인증을 통한 안전하고 보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 정비**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 및 퇴출과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 주관에서 시행되는게 바람직. 공단의 정기평가와 별도로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좋은 돌봄기관을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 인증체계를 전문적으로 마련하며, 서비스품질 인증관리를 수행해 나가야함
: 요양보호사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 노동권 보호조항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요양보호사가 괜찮은 일자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질 관리를 해야 함.

III. 요양보호사 등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권 개선

<서비스 질적 제고와 노동자 조건 향상의 관계>

- 돌봄서비스는 휴먼 서비스이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노동자의 노동력의 질이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그러나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권익, 자부심 모두가 지켜지지 못 함
- 이로 인해 돌봄서비스 영역 내의 이직률이 높고,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실질적인 한계에 봉착함
-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은 서비스 질적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돌봄 사회화 현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돌봄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6. 요양보호사 실태파악과 처우개선 조례 제정

현황

- 2016년 5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놓음으로써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광역단체 9곳, 기초단체 14곳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조례를 제정했음. 서울시가 2016년, 나머지 지자체는

2017년 하반기에 집중에서 조례 제정함. 현재 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은 서울시(광역단위 1개, 권역단위 4개), 인천시, 수원시가 전부임.

-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안정적인 요양보호사 지원체계를 갖추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고충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돌봄의 최 일선에서 실천하는 돌봄노동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역량있는 돌봄종사 인력의 안정적 재생산에 기여
- 2013년 11월에 개소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가 하나의 모델이며, 이와 같은 지원센터를 권역별, 자치구별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지원센터의 사업으로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고충상담, 권리향상 및 직무향상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취업지원,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권 사업, 취업지원 등임.

정책방안

- 지자체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 처우개선 조례를 통해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근거한 지원체계를 마련

7. 요양보호사 생활임금(생계형 일자리) 보장 및 노동조건 개선

현황

- 서울시 요양보호사 수 59,231명, 전국 313,013명 대비 18.9% (재가 20.8%, 시설 10%)

전국대비 서울시 요양보호사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재가	시설
전국	313,013	259,595	60,549
서울	59,231 (18.9)	53,972 (20.8)	6,045 (10.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요양보호사,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 시설 요양보호사 월평균 115만원, 재가 요양보호사 월 평균 65만원(석재은, 2016, 사회서비스공공성과 일자리 질 향상방안)
-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 장시간 노동(시설 188.7시간/ 24시간 격일제, 12시간 맞교대), 비정규직, 저임금, 고강도 노동, 휴게시간 부재
- 재가요양보호사의 단시간 노동, 비정규직, 비자발적 실업
- 요양보호사 1년 미만장기요양기관 퇴사현황: 시설 요양보호사 71.6%, 재가요양보호사 76.4% (장기요양위원회 실무회의자료. 2017.6.2.)
- 병가, 유급휴가, 산재 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열악한 처우에 따른 인력들의 소진과 실망으로 이탈

정책방안

- **돌봄노동자 임금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협약 및 조례 제정**
고용유지수당 지급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장시간 노동 근절 및 교대제 개선 지원: 4조 3교대, 1일 8시간 노동 확립
 : 교대제 개선 지원_8시간 교대제 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력고용, 시립/구립 시설에 우선 적용, 비영리 기관으로 확대
휴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8.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권, 건강권, 휴가권 보호

현황

-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폭언과 폭행, 성희롱, 근골격계질환 및 감정노동 문제 빈번히 제기됨.

“ 이용자의 배우자분이 꿈쩍 못하게 손목을 잡고 ‘나는 애기 엄마가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 애기 엄마가 필요하면 우리 집엔 돈 많으니까 갖다가 쓰고, 이자 없으니까 쓰고 갖다놔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황스러웠고, 집에가서 가족에게 아무말도 하지 말고 꼭 안아달라고 했을 정도로 충격 받았어요. 심장이 떨리고 모욕당했다는 기분이었어요” (2017.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상담사례집)

정책방안

- **요양보호사 성희롱 대책 마련**

: 성희롱 성추행 상담신고 창구 및 구제방안 마련

: 성희롱 대상자에 한하여 2인 1조 방문

- **독감예방주사 무료 접종 및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

- **기관장, 공무원,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및 가이드라인 마련**